



배포 일시	2022. 7. 28.(목)		
담당 부서	감사관실	책임자	과 장 김석기 (044-201-3110)
		담당자	사무관 민기숙 (044-201-3102)
	항공정책실 항공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영혜 (044-201-4219)
		담당자	사무관 강윤진 (044-201-4223)
보도일시	※ 통신·방송·인터넷은 7. 28.(목) 14:00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국토부, 이스타항공 허위 회계자료 제출 수사의뢰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의 허위 회계자료 제출에 대하여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는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2021년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으나, 금년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실시하게 되었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재무자료 요청에 대하여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항목은 신청 당시인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결손금 항목은 2020.5.31. 기준으로 작성하여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작성기준일을 표기하거나 국토부에 설명하지 않았다.
 - 조사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은 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2020.5.31.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2021.2.4. 기준 회계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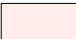

* 서울회생법원에서 선정한 A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2021.2.4. 자산가치 자료 존재

- 또한 국토부가 2021. 11월, 12월로 시기를 특정하여 회계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스타항공은 결손금 항목을 2020.5.31.기준으로 작성하고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 이에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에 방해하였다는 의혹을 수사의뢰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하였다.

1. 회계자료 비교

구 분	이스타항공 제출자료 (변경면허 신청시)	금감원 공시자료 (‘21.12.31. 기준)
자 본 금 ^①	700억원	700억원
자본잉여금	3,654억원	3,751억원
이익잉여금 (결 손 금)	-1,993억원	-4,851억원
자본총계 ^②	2,361억원	-402억원
자본잠식률 (①-②)/①	(자본잠식 없음)	(완전 자본잠식) 157.4%

*  '21.11월 기준 수치,  '20.5월 기준 수치

2. 관련 경과

- '21.11.12.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
(인수대금 700억 100만원, 채무변제계획 반영)
- '21.11.16.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신청(→국토부)
- '21.12.15. 면허발급(→이스타항공)
(재무능력, 사업계획, 결격사유 등을 종합검토)
- '22. 5.13. 이스타항공 21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공시(금감원)
회계감사 결과, '21년말 기준 결손금이 4,851억원으로 이스타
제출자료 1,993억원 대비 2,857억원 증가하여 완전자본잠식

Q1) 이례적으로 항공사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게 된 이유는?

- 제출자료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의가 있다는 의혹이 짙어 수사의뢰를 결정한 것이며, 국토부의 조사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Q2) 이스타항공은 ①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2020.5.31. 기준 회계 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이 사실을 국토부에 알렸으며, ②2021.2.4. 기준 조사보고서도 국토부에 제출하는 등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다는 입장인데?

- 이스타항공 측은 '21.12월 변경면허 심사 당시 2020.5.31. 기준 회계 자료를 사용했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이 없음
 - 이스타항공이 '22.6.22일 국토부에 제출한 소명서에서도 “제출자료의 작성방법과 금액 산정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사전에 명시하지 않아 제출자료 이용에 혼선을 끼쳐드린 점”을 인정하고 있음
- 2021.2.4. 기준 조사보고서는 변경면허 심사와 무관하게 '21.4월 회생절차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으로부터 제출받았음
 - 반면, '21.12월 변경면허 심사 당시에는 수차례의 자료 요구에도 '20.5월 기준 회계자료만을 제출하였음
- 변경면허 심사는 앞으로의 재무능력을 심사하는 과정인 만큼, 국토부가 해당사의 현재 재무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근의 자료를 제출했어야 하며,

○ 회생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조사보고서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토대로 회계자료의 정확성을 보완하거나, 최소한 자본잠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됨

□ 그러나 해당 조사보고서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확한 재무상태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움

Q3) 자본잠식이 면허기준에 해당하는지? 아울러, 이스타항공 측은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이므로, 자본잠식이 면허심사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데?

□ 항공사업법령은 소비자 보호와 항공기 안전 투자를 위하여 운항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면허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이러한 재무능력은 자본잠식과 밀접하게 연관*

* 완전자본잠식인 회사에 대해 은행은 기존 대출을 조속히 회수하려하고 추가 대출을 거부하는 등 현금 유통이 곤란할 우려가 높음 → 운영자금 조달능력에도 영향 가능

<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

1. 재무능력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항개시예정일(이하 "운항개시예정일"이라 한다)부터 3년 동안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운영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운영비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해당 기간 동안 예상되는 영업수익 및 기타수익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다만, 운항개시예정일부터 3개월 동안은 영업수익 및 기타수익을 제외하고도 해당 기간에 예상되는 운영비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

□ 또한 대표자 변경은 항공운송사업법 상 중요사항 변경에 해당하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부는 변경면허의 경우에도 면허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변경면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허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 특히 이번 이스타항공 변경면허는 단순한 대표자 변경이 아닌 경영 악화로 운항을 중단('20.3월~)했던 항공사가 기업 회생에 따라 대주주가 변경되고 신청한 변경면허로, 당시 국토부는 이를 감안하여 항공사의 재무상태와 사업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였음
- 또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발급 시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해야 하며, 운항증명 업무지침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로서 해당 재무능력 요건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항증명 재발급을 위해서도 재무능력은 중요한 요소임

Q5) 현재 이스타항공 측은 이미 완전자본잠식이 해소되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지?

- '22.6.8 이스타항공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2.5월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현재 완전자본잠식은 해소(자본잠식률 97.63%)
- 그러나 이와 별개로 변경면허 당시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해소할 수 없어 수사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하는 것임

Q6)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변경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있다는데, 이스타항공 측에 대한 이번 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

- 자본잠식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한 항공사에 대하여 변경면허 발급 여부를 검토한 바 있음
 - 모회사의 자금지원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를 발급한 경우가 있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을 이유로 변경면허 심사를 반려한 경우도 있음

Q7) 前 사주가 야당 국회의원인 점 등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 이스타항공의 제출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허위자료 제출이 확인되었고, 허위자료 제출에 고의가 있다는 의혹이 짙어 수사의뢰하게 된 것임

* 국토부의 조사권한이 미치지 않은 부분을 수사의뢰를 통해 규명할 계획